

1.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 폐지조례안

□ 폐지이유

- 국토이용계획으로 정하여진 준도시 지역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하여 용도지구별(취락, 산업촉진, 시설용지)로 수립하는 개발계획중 취락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에 수립에 관한 기준을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1조 제7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
-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2000. 2. 9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 내용중 준도시지역 개발계획수립에 관한 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 고시토록 개정됨으로써 현행 조례가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성을 상실하였음.
- 2001. 5. 30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 제136호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개정 기준을 고시하였고 또한 종전의 파주시 조례에 의한 각종 개발행위 진행이 마무리됨으로써 금회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" 동조례 폐지 "

□ 검토내용

- 파주시 준도시 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에 의거 준도시 지역을 취락지구, 산업촉진지구, 시설용지 지구등으로 구분하여 개발할 수 있는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나

-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 고시토록 되어 동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파주시의 준도시지역 취락 지구로 지정된 곳은 파주읍 봉암리, 법원읍 웅담리, 교하읍 교하리, 조리읍 대원리, 월롱면 도내리 등 5개 지역임.